

서울고등법원 2018. 4. 11 선고 2017나205454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등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8. 4. 11 선고 2017나2054549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. 9. 5 선고 2016가합20778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

피고, 피항소인 A

변론 종결 2018. 3. 14.

판결 선고 2018. 4. 11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. 9. 5. 선고 2016가합207788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.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,

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제1,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6. 6. 15.

접수 제56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예비적으로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(원고는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.)

3. 피고는 원고에게 1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2.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[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]

○ 제1심 판결 4쪽 3행 '갑 제8호증'을 '갑 제8, 11, 13호증'으로 고치고, 같은 쪽 8행 '그 무렵'부터 9행 '사실'까지를 '위 각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 2개 동이 신축되어 2006. 5. 17. 가동에 관하여, 2006. 9. 29. 나동에 관하여 각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'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5쪽 5행'을 제3호증의 기재'를 '을 제3, 7, 12호증의 각 기재'로 고치고, 같은 쪽 8행 '채무자회사는' 앞에 "채무자회사는 2007. 8. 30. 피고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'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는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, 각서,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, 보증,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'로 하고, 채권최고액을 1억 2,000만 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3,4 기재 각

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"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 5쪽 14행 '중소기업은행을' 앞에 '피고를 채무자로 하고'를 추가한다.

2.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의 요지

별지 목록 제1,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정한 매매계약이라면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매매대금 2억 8,000만 원 중 2억 4,0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그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피고는 별지 목록 제1,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채무자회사에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.

피고가 2005. 11. 7.부터 2006. 10. 10.까지 사이에 채무자회사 또는 그 대표자인 D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 395,2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, 을 제8,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돈에 대하여 D은 '이중 2006. 8. 11.자 2,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5,200,000원은 위 매매대금 2억 8,000만 원과 자신이 시공해 준 위 각 공장건물 건축비용 1억 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이다'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채무자회사에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,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, 즉 피고가 채무자회사 또는 D으로부터 2006. 4. 14. 1억 2,100만 원, 2006. 8. 11. 2,000만 원, 2008. 2. 5.부터 2008. 3. 7.까지 합계 9,980만 원 등 총 2억 4,0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,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장석조

판사강완수

판사노재호

별지